

표본업무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전산요원) 채용공고

국가데이터처에서는 표본업무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전산요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6. 2.

국가데이터처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지역	채용(모집)구분	채용인원	계약방법	채 용 기 간	수당	근무장소
대전	기간제근로자 (전산요원)	1명	근로계약	2026. 7. 1. ~ 11. 30.	102,620원 (1일 기준)	국가데이터처 표본과

* 채용기간은 채용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업무 추진일정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 담당업무
표본업무지원	표본추출틀 정비, 표본설계 및 추정 업무 지원 · 대행통계 및 행정통계 관련 표본설계 업무 지원 · 가구·농어업부문 조사모집단(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지원 · 사업체조사 및 농어업조사 표본추출 및 표본관리 관련 업무 지원 · 기타 표본설계 및 추정 관련 업무자료 정비 및 해외사례 수집 등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시~18시) 근무

4. 채용(모집)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전산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2차)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5.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통계자료 분석 가능자
 - 통계패키지(SAS, R, STATA, SPSS, Python, Excel 등) 활용 가능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계약기간 중 중도 포기하지 않은 자
 - *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 이사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
 - ** 합격자 발표 후 채용(교육포함)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
-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6. 우대요건 및 가점 기준

□ 우대요건

- 통계학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및 통계패키지 숙련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

□ 자격증 가점(1차)

자격증	점수	비고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SAS Certified Specialist: Advanced Programming Using SAS ▶ 국가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사 ▶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국가공인 SQL 전문가	5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만 인정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SAS Certified Specialist: Base Programming Using SAS ▶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국가공인 SQL 개발자	3	

□ 기타점수 가점(1차)

항목	점수	내용	비고
저소득층	2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1부모가족 세대주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
다자녀	2	·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2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1·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 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 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 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6. 6. 2.(화) ~ 2026. 6. 10.(수)
- 서류심사 : 2026. 6. 1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12.(금) 18:00 이내
- 면접일시 : 2026. 6. 17.(수) 14:00 예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장소 : 정부대전청사 국가데이터처(3동) 12층 회의실 예정
 -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18.(목) 18:00 이내
 -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s://mods.go.kr>)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8.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2.(화) ~ 2026. 6. 10.(수) 18시까지
-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국가데이터처(표본과)	김현서	042-481-3660	gustj112@korea.kr

- 접수방법 : 이메일(마감 시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서류는 무효 처리)
 - 지원서류, 자격증 등을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9.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붙임1 서식)
- 응시원서 1부(붙임2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3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서식)

☐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 이용 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 이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는 제외하고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닐 경우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자격증명서 1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6.10.(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문의사항 : 국가데이터처 표본과 채용담당자(042-481-3660)

【붙임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채용구분	성명	서명
표본업무 전문요원(전산요원)		(서명)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필수)	
2. 자기소개서(필수)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해당자에 한함)	
5. 일반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우대사항) 기타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	

*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후 함께 제출

【붙임2】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업무명	표본업무 전문요원	분 야	전산요원	응시번호	미기입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			
	주 소				
	e-mail				
일 반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청)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				
자 격 사 항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전산 관련				
	기타				
기 타	저소득층 ☐ 다자녀보육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국가유공자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주 1」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신원조사 결과 또는 사후 확인 등으로 채용결격사유(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붙 임 : 관련 증빙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자격증 등)

【붙임3】

자 기 소 개 서	작성자	
	응시번호	미기입
○ 작성요령 - 직무수행 계획, 관련분야 활동·업적, 지원동기 등을 기술하되,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역량 보유, 안정적 직무수행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1장 이내,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님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국가데이터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기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이중취업여부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 채용요건(자격·경력·학위 등), 채용우대 확인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해당자	자격·경력·학위·저소득·다자녀·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비자종류(외국인)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국가데이터처 표본과장 귀하

【붙임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가데이터처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장애인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다자녀 양육자)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 (유족)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